

제주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가합100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12. 13 선고 2023나10643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가합10060 판결

전문

원고농업회사법인 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민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민

담당변호사 이동주, 조원상, 손성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문건식

변론 종결2023. 6. 22.

판결 선고2023. 7.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가. 주위적으로, 2021. 5. 29. 체결된 채무면제 계약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으로, 2021. 5. 29. 체결된 상계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2016. 5. 30.자 매매계약 및 2016. 9. 29.자 합의에 기한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원금은 1,393,000,000원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동백나무 재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 D의 아버지인 E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인 F의 아버지인 G이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는 제주도 I 잡종지 978m²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유일한 사내이사인 J이 대표자로서 H를 운영하였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도 위 J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이다.

나. 원고의 H에 대한 채권 및 관련 소송 결과

1) 원고는 H와 2013. 1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 해제, 조건부 가계약 체결 등의 과정을 거치다가 최종적으로 2015. 5. 2. 이 사건 부동산과 그림, 분재 등 동산을 매매대금 7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였는데, 매매대금은 5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2015. 6. 8.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H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1,322,828,744원을 지급하였으나, H는 2015. 6. 22. 및 같은 해 7. 27. 원고에게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3) H는 2015. 10. 7. 제주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21. 위 매매계약이 원고의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아 H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15가합1587호).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9. 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고등법원(제주) 2018나10083호],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8. 10. 11.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대법원 2018다276881호) 위 판결이 2019. 2. 8. 확정되었다(이하 '제1 관련소송'이라고 한다).

4) 원고는 2019. 10. 22. 제주지방법원에 H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한 매매대금 1,322,828,744원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1. 1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21. 12. 8. 확정되었다(제주지방법원 2019가합13977호).

다. H의 C에 대한 채권 및 관련 소송 결과

1) J의 딸인 K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C은 2015. 10. 30. K으로부터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받아 가등기 이전의 부가등기를 마쳤다.

2) C은 2016. 1. 20.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항 기재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원고 앞으로 마쳐져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3) 원고는 2016. 3. 15. 제주지방법원에 K, C을 상대로 위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0410호),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9. 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고등법원(제주) 2018나10090호],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대법원 2016가합10410호) 위 판결이 2019. 2. 8. 확정되었다(이하 '제2 관련소송'이라고 한다).

4) 원고는 2020. 2. 5. 제주지방법원에 H에 대한 부당이득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H의 C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1,322,828,744원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1. 1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21. 12. 8. 확정되었다(제주지방법원 2019가합13977호).

라.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및 관련 소송 결과

1) 피고와 G은 2016. 5. 30.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매대금 10,8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으로 잔금 지급기일을 원고가 제기한 제1, 2 관련소송 결과 확인 후로 정하였다.

2) J은 2016. 9. 25. G에게 아래와 같은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확약서

주 C(대표 L)은 G과 부동산 매매 함에 있어 현재 소송 중인 E과의 소송이 2년 이내에 승소 확정기로 보증하고 만약 2018년 12월 30.일까지 재판관계가 끝나지 않으면 승, 패소와 관계 없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매매잔금 포기).

2016. 9. 25.

주 C대표 L, 대리인 J

주 대표 J

G 귀하

3) 피고는 C과 2016. 9. 29. 위 매매계약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았다.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

- 매도인 측 : 매도인 C, 이행보증인 J, 이행보증인 겸 예비적 매도인 지위 승계인 H
- 매수인 측 : 매수인 주식회사 B('피고'를 말한다), 이행보증인 G

• 중개인 : M

아래

1. 본 합의서는 2016. 5. 30.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2016. 9. 현재 진행 중인 농업회사법인 A주식회사('원고'를 말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제1 관련소송'을 말한다) 및 가등기말소등기청구('제2 관련소송'을 말한다)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종전 계약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2. 본 합의서 작성이 합의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이라도 5. 30.자 매매계약 및 본 합의서는 효력이 있다.
 3. 매도인과 이행보증인들은 위 소송의 승소를 보장하며, 이로 인하여 매수인과 매수이행보증인의 소유권취득 및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증한다.
 5. 본 계약은 M의 중개로 이루어졌으며, 매매대금은 10,800,000,000원이다.
 6. 2016. 9. 29. 현재 계약금 및 중도금 4,450,000,000원이 지급되었다.
 9. 매매잔금 금 1,500,000,000원, A 유보금 1,000,000,000원 중 3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추가 발생 채무 및 추가 필요 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을 유보하며, 추가 지급 사유 발생 시 즉시 상계처리한다.
 11. 채무인수금액 3,847,385,035원 및 L, A 유보금 2,1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0,000,000원을 지급한다.
 12. 현재 제1 관련소송, 제2 관련소송이 진행 중이며, 매도인 측은 매수인 측의 사건확인을 위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16. 이행보증인들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증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 측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보증금액한도 14,000,000,000원, 보증기간 5년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17. 이행보증인 주식회사 H는 가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 측에게 이를 이전할 책임을 지며, 부동산 및 동산 매매계약과 본 합의서의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2016. 9. 29.
- 4) 피고는 2016. 10.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2020. 2. 5. 제주지방법원에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매매대금 채권 1,327,828,744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2020. 2. 7.자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이 2020. 2.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제주지방법원 2020카단10175호).

6) C은 2019. 11. 12. 제주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 2,150,00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피고의 이의로 제주지방법원 2019가합14284호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3 관련소송'이라고 한다). C은 소송절차에서 청구금액을 1,393,000,000원으로 감축하였고, 위 법원은 2021. 5. 13. 'C이 위 청구를 포기하고 C과 피고 사이에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발령하여(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 위 결정은 2021. 5.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원고는 H에 대하여 1,327,828,744원의 부당이득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을 상대로 H의 C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대위 소송을 하여 승소함으로써, C에 대하여 1,327,828,744원의 확정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C은 피고에 대한 1,393,000,000원의 매매대금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C과 피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2021. 5. 29. 확정되게 하였는데, 이는 C과 피고가 위 확정일 무렵 채무면제 계약(이하 '원고 주장 채무면제 계약'이라고 한다) 또는 상계계약(이하 '원고 주장 상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C이 피고와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무면제 계약 또는 상계계약을 체결한 것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2021. 5. 29. 체결된 채무면제 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같은 날 체결된 상계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2016. 5. 30.자 매매계약 및 2016. 9. 29.자 합의에 기한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원금이 1,393,000,000원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3. 사해행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의 C에 대한 확정판결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보전채권이 되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 주장 채무면제 계약 또는 원고 주장 상계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위 각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인바, 이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공통되는 것으로서 이를 함께 본다.

나. 사해행위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0478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C과 피고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위 당사자들 사이에 원고 주장 채무면제 계약 또는 원고 주장 상계계약이 성립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위 법리를 근거로, C과 피고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위 당사자 간에 채무면제 계약 또는 상계계약이 성립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법리는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법률관계가 실재하지 않음에도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이전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제3 관련소송의 전제가 된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진정하게 성립하여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한편 C은 이 사건 제3 관련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2018. 1. 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매매대금 잔금 독촉에 관한 최고서(갑 제6호증의 3)를 발송하였고, 이후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지급명령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소송절차에서 상계 등을 주장하며 C의 청구를 실질적으로 다투었는데(갑 제6호증의 9, 16), C은 피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하였다(갑 제6호증의 18, 39). 그러나 피고는 C이 받아들이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다투면서, 오히려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 2 관련소송의 신속한 종결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 제기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갑 제6호증의 32).

이와 같은 이 사건 제3 관련소송 전후의 경과, C과 피고의 변론내용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 사건 제3 관련소송을 제기할 당시 C과 피고 사이에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C의 책임재산을 피고에게 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3 관련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확약서(갑 제6호증의 50)를 새롭게 제출하면서 C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헤민 명의로 2021. 4. 9. C 대표 L에게 같은 취지의 '계약불이행 및 소송사기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갑 제6호증의 64). 이후 C의 요청에 따라 위 사건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진행하였는데(갑 제6호증의 65, 66),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양측의 의견 대립으로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결국 위 재판부는 C이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발령하였다(갑 제6호증의 68).

이처럼 이 사건 확약서가 제출된 이후의 소송 진행 경과, 조정기일에서의 C과 피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 관련소송을 이용하고자 하는 C과 피고의 통모 의사를 뚜렷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결국 C과 피고는 이 사건 제3 관련소송에서 예상되는 판결의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이의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는 효력이 없거나 이 사건 합의서로써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확약서에 날인된 C 명의 인영의 진정성립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합의서는 C와 피고의 2016. 5. 30.자 매매계약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특별히 C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정함으로써 매매계약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반면 이 사건 확약서는 이 사건 제1, 2 관련소송이 지연될 경우 피고가 입게 될 손해 등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가 이 사건 확약서를 배제한다거나 갈음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확약서는 이 사건 합의서와 별개로 효력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제1, 2 관련소송은 2018. 12. 30.까지 종결되지 아니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그 무렵 C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채권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C이 위 청구를 포기하고, C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한다'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조항은, C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고 C와 피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이의 없이 확정됨으로써 원고 주장 채무면제 계약 또는 원고 주장 상계계약과 같은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설령 원고 주장 채무면제 계약 또는 원고 주장 상계계약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채권이 소멸한 이상 이는 C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C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 주장 채무면제 계약 또는 원고 주장 상계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확인의 소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써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청구 부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확인의 소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C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잔대금 채권이 채무면제로 소멸하였고,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노현미

판사정가원

판사이범휘